



Q 제628조의2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와 관련하여 어떤 사항이 신설되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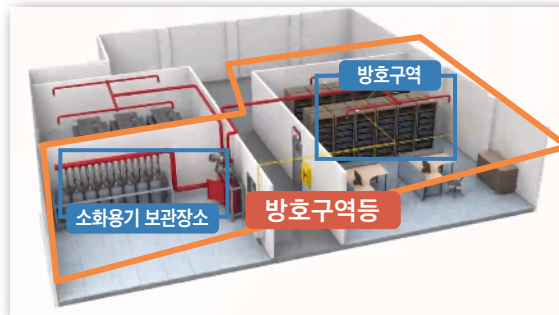
A 이번 개정법령에서는 이산화탄소를 소화약제로 사용하는 소화설비 취급 시 안전조치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였습니다.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설치된 방호구역등 내 출입 시 조치사항, 점검, 유지·보수 시 조치사항 등을 이행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안전보건규칙 제628조의2) 첨부

Q 제628조의2 신설 규정의 ‘방호구역등’은 방호구역과 소화용기 보관장소를 모두 포함하는 건가요?

A 네 맞습니다. 신설 규정에서는 적용대상을 방호구역*과 소화용기 보관장소를 포함한 ‘방호구역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소방감지 설비로 화재를 감시하여 화재발생 시 소화설비를 작동시켜 불을 끄도록 설정한 구역



Q 제2호 방호구역등의 출입기록을 관리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는 경우, 적절한 설치·운영방법은 무엇인가요?

A CCTV는 방호구역등의 모든 출입구에서 출입하는 근로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합니다. CCTV 영상 저장기간(최소 1개월 권장), 설치 수량 등은 사업장 여건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제3호 가목 ‘적정공기’란 어떤 상태를 의미하나요?

A 일반적으로는 근로자 건강에 위협이 되지 않는 공기상태를 의미합니다. 특히 방호구역 내에서는 질식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산소농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며,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의 ‘적정공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안전보건규칙 제618조 제3호」 “적정공기”란 산소농도 18% 이상 23.5% 미만, 탄산가스 농도 1.5% 미만, 일산화탄소 농도가 30ppm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ppm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의미함

Q 제3호 다목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출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야 하나요? 교육시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나요?

A 해당 교육의 필수 이수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등과 함께 실시해도 무방하므로 효율적인 교육 운영계획을 수립·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일시, 참석자, 내용 등을 포함한 서류를 작성·보관하여 교육실시 여부를 관리할 것

Q 제3호 마목 소화설비 작동과 관련된 전기, 배관 등에 관한 작업 시 작업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A 작업계획서에는 작업일정, 소화설비 설치도면 검토, 작업방법, 소화설비 작동금지 조치 등 안전보건규칙 제628조의2 제3항 마목에 규정된 내용을 포함하여 작업 전 준수해야 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Q 제6호 개정 법령의 '이동거리'는 어떤 기준인가요?

A 안전보건규칙 제628조의2 제6호의 '이동거리'는 방호구역 각 부분으로부터 출입구 또는 비상구 까지 근로자들이 실제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의미합니다.

Q 제2호 산소 또는 이산화탄소 감지 및 경보장치는 어떤 기준으로 설치해야 하나요?

A 개정 규칙에 따라 산소 또는 이산화탄소 감지 및 경보장치를 설치할 때는 방호구역 및 소화용기 보관장소의 면적, 설비 운영 상태를 고려해 소화약제가 누출되더라도 이를 즉시 감지할 수 있도록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때 측정대상 가스의 특성과 제조사의 권장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부칙 제8조에 따라 시행 당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운영 중인 사업장은 규칙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설치해야 함(2024.10.18.)

Q 제6호 감지 및 경보장치 중 한가지만 설치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방호구역 내에 이산화탄소 방출을 감지하여 근로자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감지기와 경보장치 모두 설치해야 합니다.

